

5

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설(영§28의2 18호 신설 등)

① 개정개요

※ 지역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(8.14.) 후속조치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강화(중과예외 신설)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 - 중과세 제외(요건 모두 충족시) : ①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상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※ 취득 후 60일 내 등록 필요,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 시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취득기간 : '26.1.1. ~ '26.12.31. <input type="checkbox"/> ③ 취득지역 : <u>인구감소지역</u> (89개 시·군·구) - 주택 수 제외 :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시 해당 주택

□ 개정내용

- 인구감소지역 내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신설
 - (영 §28의2 18호) 등록임대사업자가 '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60일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제외
 - (영 §28의4⑥ 1호나목) 중과세 제외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